



## 금융위원회



###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쟁점 논의



#### 1. 현황

- 금융위원회는 2015.11.29. 일정한 제약조건을 전제로 한국카카오 은행, 케이뱅크 은행 등 2곳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하였음

표 1 | 예비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한국카카오 은행	케이뱅크 은행
한국투자금융지주(50%), 국민은행(10%), 카카오(10%*)	우리은행(10%), GS리테일(10%*), 한화생명보험(10%*), 다날(10%*), KT(8%*)

자료: 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2015.11.29. 보도자료 \*4%까지만 의결권 행사 가능

- 금융위원회는 현행 「은행법」 하에서 시범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1~2개를 인가한 이후 관련 「은행법」 조항을 개정하여 본격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하고자 함

#### 2. 문제점

- 인터넷전문은행의 본격적인 출범에 대비하여 산업자본의 은행에 대한 소유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에 대해서 완화하지는 「은행법」 개정이 논란이 되고 있음
  - 비금융주력자인 ICT기업의 보유지분이 적을 경우 이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본질을 충족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sup>1)</sup>

1) 김경진, 「20대 국회는 풀 수 있을까」, 중앙일보, 2016.4.6.

- 이와 관련하여 제20대 국회에서는 2건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 발의, 강석진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음

【 표 2 】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행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제20대국회)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2000765)	강석진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20002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은행 지분보유 승인절차를 거쳐 보유할 수 있도록 함</li> <li>•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인이 자연인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은행 지분보유 승인절차를 거쳐 보유할 수 있도록 함</li> </ul>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행지분 보유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ICT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이고 새로운 은행경영 주체의 출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sup>2)</sup>
  - 이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만 비금융주력자의 주식 보유 제한에 예외를 두는 것은 향후 일반은행에 대해서도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지게 되는 단초를 제공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있음

### 3. 개선방안

- 예비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이 본인가 후 영업을 시작할 예정인 2017년 초를 앞두고 인터넷전문은행관련 「은행법」 개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전문은행 주주에 대한 지분 보유 규제 등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의 방향성이 계속 정리되지 않을 경우 규범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국회차원에서 기본적인 규제구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홍정아	02) 788-4581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	02) 2100-2951

2) 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보도자료, 2015.11.29.



## 은행권 성과연봉제 도입



### 1. 현황

- 금융업은 생산성 면에서 제조업과 같지만 평균 연봉은 1.6배나 많고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이나 그렇지 않은 직원 모두 똑같은 성과급을 받아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라는 시각이 있음<sup>3)</sup>
- 특히 국내 은행 산업은 수익성 악화 및 경쟁심화로 위기와 격변의 상황에 직면하였으나, 은행 내 인력구조의 고령화(40세 이상 인력 비중 약 49%) 및 호봉제 등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sup>4)</sup>
  -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영리법인인 민간 은행의 공통적인 특성과 운영 실태 및 해외 사례를 고려하여 연봉 폭을 평균 20~30%로 운영하고 향후 40%까지 차등 폭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간 은행 성과연봉제 도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음

### 2. 문제점

- 은행분야의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은행 노동조합 등의 반발이 강력한 상황임
  - 금융노동조합은 사측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무리하게 강요할 경우 긴급 대표자회의, 지부별 순회집회, 지부 합동대의원대회 등을 거친 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음
- 은행원들은 물론 금융권 전문가들은 지점 단위로 활동하면서 영업환경이 다른 은행원들의 직무를 명확하게 분석해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고 지역에 따른 성과 차이도 크며, 성과주의에 따른 과당경쟁이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음<sup>5)</sup>

### 3. 개선방안

- 성과연봉제의 장단점 및 도입 여부 등과 관련된 문제는 정부와 은행, 직원 간에 인식 차이가

3) 박창규, 「임종룡 “은행 성과연봉제, 노조 직접 만나 설득”」, 동아닷컴, 2016.7.25.

4) 은행연합회, 「“민간 은행 성과연봉제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 보도자료, 2016. 7.21.

5) 김은성, 「은행권 내일 성과연봉제 교섭재개…금소연 “불완전 판매 우려”」, 글로벌이코노믹, 2016.7.25.

크고 반발도 거센 만큼 정책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과제로 보임

- 은행측은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취업규칙 변경 등을 통해 내년부터 성과연봉제 확대안을 도입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정부로하여금 향후 성과연봉 제도 도입여부에 대한 공감대와 함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홍정아	02) 788-4581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	02) 2100-2951

##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

### 1. 현황

- 국내 주요 6개 은행<sup>6)</sup>의 규모, 수익성, 수익구조, 비용구조 등 전반적인 수익성 지표는 세계 100대 은행과 비교할 때 열위에 있음<sup>7)</sup>
  - 국내 주요 6개 은행은 세계 선진은행에 비해 기본재산, 총자산, GDP대비 총자산과 평균자산증가율이 모두 낮은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규모면에서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임
  - 국내은행의 ROA와 ROE는 세계 1~10위 은행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자이익비중이 67.4%로 중국을 제외한 세계 주요 은행의 이자수익 비중인 53.3%(1~10위)나 56.8%(11~50위)에 비해 매우 높아 이자수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
  - 국내은행의 자산운용형태가 매우 유사하고 비이자수익과 수수료 수익 비중이 낮으며 평균 인건비 비중(62%)도 세계 주요 은행 평균(54%)에 비해 높은 편임

6)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7) 현황은 남주하, 「은행산업 경쟁력 제고와 금융회사 민영화 방안」, 『2016년도 한국경제학회 정책세미나 자료집』, 2016.7.15.의 내용을 정리함



## 2. 문제점

- 지난 수년간 세계 주요 은행도 저성장 및 저금리 기조 속에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어 국내은행의 수익성 약화를 은행의 역량부족만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국내 은행의 성과가 부진한 것은 경영자들이 과도한 보수를 누리면서 주주 이익보다 감독 당국이나 임면권자의 의향에 지나치게 치중해 오고 감사의 독립성과 사외이사들의 역할이 미진한 것도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있음<sup>8)</sup>
- 우리은행 매각 추진 과정에서 경영의 독립성 보장이 중요한 화두가 될 만큼 관치금융이 국내 은행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약점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음

## 3. 개선방안

- 추세적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일부 국가의 은행들이 리스크 및 영업비용 관리의 효율성 개선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sup>9)</sup>은 경영전략의 중요성에 대한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임
  - 은행이 수입의 대부분을 이자이익에 의존하는 단순한 수익구조에서 탈피하여 신규상품 및 차별적 마케팅, 해외시장 성과제고 등을 포함한 혁신적인 노력에 집중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험관리 강화와 함께 기업지배구조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음<sup>10)</sup>
  - 위험관리 측면은 1,200조 원 수준의 가계부채와 강력한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부채에 대한 선제적 위험관리뿐만 아니라, 2011년 말 현재 1,100조 원을 상회하는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에 대한 감시 강화도 필수적이라는 것임
  - 경영자와 감사, 사외이사 등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바탕으로 경영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분위기 형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8) 이재석, 「은행 경쟁력 강화 위해선 사외이사·감사 독립성 보장」, 문화일보, 2016.2.17.

9) 김주환, 「KB지식비타민: 지난 10년 글로벌 은행의 국가별 수익성 변화」, 2016.5.2.

10) 이재석, 「은행 경쟁력 강화 위해선 사외이사·감사 독립성 보장」, 문화일보, 2016.2.17.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홍정아	02) 788-4581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	02) 2100-2951

## 성과보수 환수 의무제도 도입

### 1. 현황

- 보수환수(Clawback) 제도란, 계약에서 정한 특정상황 (고의나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미친 경우, 특정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등)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임직원에게 이미 지급된 금전적·비금전적 보수를 회사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또는 계약 조항을 의미함<sup>1)</sup>
- 국내에서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이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켜 부당한 성과금을 수령한 사안<sup>2)</sup>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과 2014년 회계연도에 총 8,785억원의 영업이익을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6,557억원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짐
  -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은 부정공시를 통해 2014년에 자신들에게 48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2013년과 2014년에 직원들에게도 총 1,984억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였음

### 2. 문제점

- 회사가 계약을 통해 부당한 임원의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의무가 아닌 이상 회사가 이를 자발적으로 시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현행 금융업종별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은 강제성이 없이 금융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채택

1) 엄수진, 「국내외 보수환수(Clawback) 제도 동향」, CGS report 2014년 4권 6호, 2014.

2) 손혁, 「분식 회계 막는 '보수환수제' 도입하라」, 2016.6.29. 조선닷컴의 정리내용을 인용함

하는 것이므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음

- 금융업종별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의 내용은 대체로 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경영진과 특정직원 또는 변동보상 대상자 등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내용이며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위법행위 발생’을 명시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 3. 개선방안

- 성과에 상응하지 않은 과다보수 문제를 해소하고 성과보수를 목적으로 위법위규 행위를 할 인센티브를 제거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각계의 지적이 있음
- 법률상 성과보수 환수 의무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제도설계가 필요함<sup>13)</sup>
  -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는 ① 위법위규 행위를 성과보수의 환수사유로 할 것인지, ② 분식회계 내지 회계오류의 시정으로 한정할 것인지, ③ 재무제표 중요 사항의 거짓기재 등 유통공시규정 위반행위를 사유로 할 것인지 등이 문제될 수 있음
  - 성과보수 환수제도가 적용되는 대상과 관련해서는 임원으로 한정하는 방안, 리스크담당 임원과 준법감시인·내부통제 담당 임원을 포함하는 방안 등이 쟁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홍정아	02) 788-4581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	02) 2100-2684

13) 안수현,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 지문회신」, 2016.7.6.



## 유사수신행위 예방 및 근절



### 1. 현황

-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투자원금뿐 아니라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준다면 서 투자를 유인하는 등 유사수신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 합법적인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음<sup>14)</sup>
  - 유사수신 제보 건수는 2015년 상반기에는 87건에 불과했지만, 2015년 하반기에는 166건으로 급증했고 2016년 상반기에 298건으로 또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sup>15)</sup>

### 2. 문제점

- 금융감독원이 2015년부터 2016년 1/4분기 사이에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137개 혐의업체 중 금융업을 사칭한 경우는 모두 16건임<sup>16)</sup>
  - 이들은 FX마진거래, 종합금융컨설팅, 선물옵션 등에 투자한다고 하는 등 사기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조직화되는 추세에 있어 소비자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3. 개선방안

- 금융당국은 최근 유사수신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나 영업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sup>17)</sup>
  -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해당 업체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임

14) 금융감독원, 「합법적인 금융업이라고 속이는 유사수신행위 다수 적발」, 보도자료, 2016.5.12.

15) 윤석진,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추세…유사수신 제보는 늘어」, 뉴스토마토, 2016.7.24.

16) 금융감독원, 「합법적인 금융업이라고 속이는 유사수신행위 다수 적발」, 보도자료, 2016.5.12.

17) 윤석진, 「금융당국, 유사수신행위로 '골머리'…행정처분 가능케 법개정 검토」, 뉴스토마토, 2016.7.27.

- 행정처분 외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 형사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홍정아	02) 788-4581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	02) 2100-2951

 **자동차보험 사망사고 위자료 과소문제** 

1. 현황

-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5.3.1일부터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원인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기준금액을 6년 8개월 만에 과거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변경하여 재판에서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기준 금액은 20세 이하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4,000만원을, 20세 이상 60세 이하는 4,500만원이며, 1급 장애를 받게 되면 최대 70% 수준인 3,150만원을 지급하는 데 그치고 있음

2. 문제점

- 현행 자동차보험의 사망 위자료 기준금액이 법원의 위자료 금액에 비하여 너무 낮게 책정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심지어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등 자동차보험산업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음
  - 일부 보험사의 경우 소비자의 소송이나 민원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의 위자료 금액과 법원의 위자료 금액차이를 비교하여 ‘특인(특별승인)’이라는 내부제도를 통해 보험금을 상향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 3. 개선방안

-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 인적손해 보험금이 비현실적으로 낮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상 위자료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업계와 법원사이에 2배 이상 차이나는 위자료금액을 판례 수준에 맞추거나 현실화 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창호	02) 788-4582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손주형	02) 2100-2965

##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과소문제

### 1. 현황

- 자동차사고 후 수리한 차량의 외관과 기능뿐 아니라 안전성에도 하자가 생길 수 있어 차량가격 하락이 불가피 한 경우, 차량의 가치 하락을 보험으로 보상해주는 것을 ‘시세하락 손해보험금’ ‘감가 손해보험금’ 또는 ‘격락 손해보험금’이라고 함.
  -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 손해보험금’은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넘어설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각각 지급하고 있음

### 2. 문제점

- 여신금융사의 경우 차량 리스나 할부, 렌트서비스 이용 고객이 차량을 반납할 때 사고로 인한 차량시세 하락액을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이 지나치게 적어 차량시세 가치 하락금액과 큰 갭이 발생, 이에 불만을 품은 고객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 손해보험금’ 지급은 출고 후 2년 이하 자동차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2년 이상 사고차량 소유자의 불만이 많고 법원의 판결금액과도 차이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민원이 많이 발생함

### 3. 개선방안

- ‘시세하락 손해보험금’을 현실화할 경우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신중론도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의 ‘시세하락 손해보험금’ 지급기준이 까다롭고 지급금액도 현실성에 맞지 않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시세하락 손해보험금’ 관련규정을 법원판결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창호	02) 788-4582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손주형	02) 2100-2965

## 이륜자동차종합보험 가입거부 문제점과 개선과제

### 1. 현황

-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자료<sup>18)</sup>를 보면, 2014년 11,758건의 이륜차(오토바이)사고로 392명이 사망하고 11,589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2013년과 비교하면 사망자는 5.1% 감소이나 사고발생 건수는 12.7%, 중경상자는 9.9% 늘어난 것임
- 그러나 이륜차보험 가입률은 저조하여 보험개발원 분석 결과, 2015년 말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오토바이 216만 6,000대 중 책임보험 가입 이륜차는 92만여대로 보험가입률이 42.5%에 그침
  - 모든 배기량의 오토바이는 2012.1월부터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으나 여전히 가입

18)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률은 낮으며 종합보험 대인배상 항목에 가입한 이륜차는 12만 3,000여대로 5.7%이고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 가입률은 3.7%와 0.5%에 불과함

## 2. 문제점

- 보험사는 이륜자동차의 경우 생계형 운전자(퀵서비스, 배달 등)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그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많아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이륜차종합보험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입장임
  - 보험사의 이륜자동차보험 불수용 사유는 설득력이 있지만 이륜자동차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채 운행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는 일반자동차 사고와 달리 사망사고 등 치명적인 사고를 동반하는 경우가 높아 대책마련이 필요함

## 3. 개선방안

- 이륜차종합보험 인수시 발생하는 손실을 다수의 보험사가 공동 부담하는 방식의 '공동인수', 이륜자동차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단종보험사의 설립 또는 국가가 관리하는 이륜자동차 공제조합의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창호	02) 788-4582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손주형	02) 2100-2965

##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및 소멸시효 문제

### 1. 현황

- 대법원은 지난 2016.5.12일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2년이 경과하여 자살한 경우, 보험회사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음



- 그러나 동 판결에도 불구하고 14개 생명보험회사 중 삼성, 한화, 교보생명 등 7개사는 2016.7.15.일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멸시효 관련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후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

## 2. 문제점

-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보험사에 대하여 현장검사 등 직권조사를 시행하고 임직원 문책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음
- 대법판결 후 ING, 신한생명 등 일부 보험사가 관련 보험금 지급을 발표하였으나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대형 생명보험사와 유사상품을 판매한 우체국보험, 농협, 수협, 신한협, 새마을금고 등은 여전히 소멸시효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음
- 지난 2015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소송규모와 현황을 파악하여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더라도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금융감독원에 요구한바 있으나 여전히 시정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3. 개선방안

-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결과가 되므로,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귀책사유로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관련법규 개정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보험사의 소송남용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소액다수 보험금 미수령 피해자에 대한 소제기 유인 증가를 위하여 보험소비자를 위한 사법적 구제수단인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구체적인 입법방안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창호	02) 788-4582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손주형	02) 2100-2965



## 암보험금(갑상선암 전이 2차암) 미지급 문제



### 1. 현황

- 지난 2006~2011년까지 판매된 암보험 약관에는 갑상선암(C73\*)이 림프절로 전이(C77\*\*)될 경우 보험금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2006년 이전에는 갑상선암도 일반암과 똑같이 보험 가입금액 100%를 지급받았지만 의료기술 발달로 갑상선암이 크게 늘어나자 보험사들은 이를 소액암으로 분류해 일반암 대비 보험금을 10~20%만 지급함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 갑상선 주변에는 림프절이 많아 암 특성상 주위로 전이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병원에 서는 갑상선암에 'C73' 코드를 부여하고 전이된 암에는 'C77' 코드를 부여함

### 2. 문제점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이차성(Secondary)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의 경우 암보험금 산정기준이 논란이 되어 동일암에 대하여 보험회사별 산정기준의 차이(소액암, 일반암 등)로 보험금이 달라지는 불합리 현상이 발생함

- 금감원은 2011.4.1일 갑상선암(원발암, C73) 부위가 확인되는 전이암(C77)은 갑상선암(원발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을 명확히 하여 림프절로 전이된 암(C77)에 대해서도 갑상선암(원발암, C73)기준으로 소액암 보험금(일반암의 10~20% 보험금)만 지급하도록 정리함

- 그러나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C77) 진단을 받은 보험가입자들은 법원에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에서는 소액암(원발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내용이 많았지만 2심 법원\*에서는 「약관규제법」에 따른 '작성자불이익 원칙'을 적용하여 일반암(C77) 보험금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많음

\* 부산지법(2015.5.14.), 남부지법(2015.7.24. 선고 2014나50673 판결), 수원지법(2016.2.4.)

- 언론보도<sup>19)</sup>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로 보험금 지급 기준이 명확해지면 자살보험금처럼 과소

19) 머니투데이, [단독]암보험금 80% 덜 준 보험사들.. '제2의 자살보험금' 비화, 2016.7.6.

지급한 보험금을 소급해 추가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를 우려해 추가 소송에 나서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음.

- 2011년 기준 관련 손보사의 암보험 보유계약은 각각 180만건임

### 3. 개선방안

- 보험사들이 소송(2심)을 제기하여 승소한 일부 보험가입자에게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고 있어 논란이 있으므로, 보험가입자간 형평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2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심인 대법원으로 가지 아니하고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은 대법판결에 대한 부담감(작성자불이익 원칙)때문으로 판단됨
- 이와 관련된 논의가 확대될 경우, 손보사(180건)가 보유한 암보험 계약 중 '갑상선 림프절 2차 전이암(C77)'과 관련한 내용이 제2의 자살보험금 및 소멸시효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임
  - 2014.4.29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 사안에 대하여 소액암으로 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리면서 다음과 같은 의학적 판단에 기초함을 주장하고 있음
    - 대한갑상선학회 : 자문소견에서 갑상선암의 진행상태를 적절히 보여주기 위하여 원 발부위와 전이된 부위를 알 수 있도록 C73과 C77.0을 모두 코딩하는 것으로 답변함
    - 대한병리학회 : 갑상선암은 림프절 전이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암에 비해 예후가 훨씬 좋기 때문에 갑상선암을 다른 일반암과 구분하여 암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C73코드만 부여받은 환자와 C73 코드에 C77.0 코드를 추가 부여받은 환자를 구분하여 암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으로 답변함
  - 위 판단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인코딩 지침도 불명확하므로, 2011.4.1일 갑상선암(원발암, C73)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을 개정하기 이전의 림프절 전이암(C77)은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창호	02) 788-4582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손주형	02) 2100-2965

## 보험사의 남소(소송남발) 문제와 개선과제

### 1. 현황

- 금융당국은 지난 2014년 보험사들이 제기한 보험지급 관련 소송이 전년대비 70% 이상 증가한 데 따른 특단의 대책으로 소송을 많이 하는 보험사를 소비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소송현황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
  - 금감원은 보험사가 소송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소송남용을 하지 않도록 사내에 소송 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간주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2. 문제점

- 공시제도는 보험사의 남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보험 수익환 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려는 보험사와 보험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가입자간 분쟁이 지속되고 보험사가 소송대신 민사조정을 택하는 경우도 있음
  - 보험가입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 점과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아예 제기하지 못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 보호대책이 필요함

### 3. 개선방안

- 보험사가 소송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금액 이하 소액금액의 경우 소송을 제한하는 방안, 소송전 피해구제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안, 보험사가 소송대신 선택하는 민사조정을 억제하는 방안 등 소비자보호 대책이 필요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창호	02) 788-4582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손주형	02) 2100-2965



## 실손의료보험 상품세분화 등 개선문제



### 1. 현황

- 지난 2016.6.16일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금융당국은 보험금 청구가 많은 고객은 보험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손보험제도 변경안 보고서를 발표함
  -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실손보험의 상품구조를 바꾸어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기본형 실손보험과 보장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특약형을 구분하고, 보건복지부와 금융당국이 협업하는 제3의 전문심사기관을 구축해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의료비 지급기준을 마련해 과잉진료로 흘러가는 보험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임

### 2. 문제점

- 지난해 말 기준 실손의료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총 3,265만 5,700건으로, 국민의 약 62%가 가입한 것으로 집계되었지만 비급여 부문의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와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 미비로 ‘손해율 급등→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음
  - 발표자는 실손보험금 지급은 소형 병원 및 근골격계 비급여 의료비에 집중되고 있으며, 비급여 의료의 명칭과 코드 등이 의료기관별로 다르고, 비급여 의료의 가격·진료량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비해 진료 적정성 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함
  -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가구당 실손보험 보험료가 올해 월 10만 6,000원(4인가족 기준)에서 2026년엔 21만 6,000원까지 올라 10년 내에 약 2배 이상 급등할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다
- 그러나 의료계 및 학계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 반발하며, 보험료 할증을 손해율 관리의 방법으로 삼게 되면 소비자들이 진료를 받는 데 주저하게 되고, 이 경우 국민의 의료 보장권을 크게 해칠 수 있으며 또한 보험사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함

### 3. 개선방안

- 실손의료보험 문제는 상품개발초기부터 시작된 내용으로 보장기간이 100세로 보험료 납입기간 역시 100세만기인바 보험료인상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개연성이 상품판매초기부터 제기된 내용이나 이를 설계사나 보험사 모두 소외시한 경향이 있음
  - 아울러 실손보험의 비급여의료비 문제 역시 실손보험상품뿐만 아니라 비급여시장의 확대에 인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영역에도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사안임
  -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비급여의료비는 심사하여 급여의 영역으로 포함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실손의료보험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있어서도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따라서 샘플링조사를 통해 비급여의료비의 적정급여화가 필요함
  -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과 관련하여 보험사 역시 정부부처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비 심사의뢰만을 맡길 것이 아니라 생·손보사가 합심하는 민간심사평가원을 설립하여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실손의료보험을 심사할 수 있는 법상 권한도 없고 위탁을 받아줄 개연성도 없으므로 스스로 먼저 실손의료보험의 의료비를 심사하면서 의료적 데이터 및 판단력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법상 가입이 강제화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 의료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가능하나, 민간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법상 규정이 없어 국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탁을 받아 실손의료보험 의료비 심사를 하는 것도 적절한 모습으로 보기 어려움
- 금융과 건강을 담당하는 부처간 칸막이 해소를 위해 실손의료보험 TF를 설치한바 동 기구를 통해 유효적절한 실천방안과 협력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과 보충적 실손의료보험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창호	02) 788-4582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손주형	02) 2100-2965



## 보험조사분석사 제도 및 손해사정사 갈등문제



### 1. 현황

- 보험연수원은 최근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 전단계에서 보험범죄 사고 조사와 분석, 보험사기 예방과 적발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보험조사분석사 자격을 도입해 오는 10월 첫 시험을 치를 예정임
- 연수원의 계획이 알려지자 손해사정사회는 성명을 내고 △ 손해사정사와의 업무 중복 △ 자격 기본법 위반 △ 일부 부실한 보험조사분석사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등을 지적하며 보험조사분석사 자격제도 시행 중단을 주장함

### 2. 문제점

- 보험조사분석사와 손해사정사의 업무 내용 중 실제로 중복되는 부분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내용을 보면 보험조사분석사 직무내용이 △ 보험조사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험 인수심사, △ 손해액 산정, △ 보험금 지급 등 보험업무 전 단계에서 보험사고의 조사, 분석 △ 보험범죄의 적발, 예방 업무를 담당함
  - 손해사정사회는 금융위원회 민간자격으로 등록된 보험조사분석사의 직무 중 △ 손해액 산정, △ 보험금 지급 등 보험업무 전 단계에서 보험사고의 조사, 분석 업무가 손해사정사의 업무와 같다고 주장함
  - 한편, 「보험업법」 제185조는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해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을 담당(위탁)하게 하고 있는데, 손해사정사는 보험사들이 손해사정사 고용의무 규정 및 보조인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향후 합격이 쉬운 보험조사분석사들을 고용하여 보다 낮은 비용을 들여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업무를 처리할 수 것으로 생각함
  - 아울러, 일부 보험조사분석사들이 손해액 산정을 잘못하거나 보험사만 이익을 보도록 행동할 경우 보험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 3. 개선방안

- 보험조사분석사가 보험금 누수 방지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업무 수행에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격제도를 도입한다면 금융위 등 관련부처에서 분명하게 보험사기 조사업무범위와 내용 등에 국한한다는 교통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보험조사분석사의 경우 민간자격이어서 보험업법 등 관련 법률에 업무범위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자격제도 관련한 다툼이 꾸준히 제기될 수 있기에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이를 규정하여 손해사정사와 구분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창호	02) 788-4582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손주형	02) 2100-2965

## 법인보험대리점(GA)의 금감원퇴직자 재취업문제

### 1. 현황

- 금피아 논란으로 금융사로 이직이 어려운 전직 금감원 퇴직자들이 신설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취업하는 등 금감원 퇴직자의 재취업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는 와중에, 최근 대형 보험사들이 신설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 고위직으로 재취업하고 있음
  - 이미 500명 이상 설계사를 보유한 전체 43개 GA 중 14개사(32.6%)에 금감원 퇴직자들이 재직하고 있는데 이들은 영업을 검사하거나 보험사의 건전성을 감독해온 감독당국자들이 대부분임

### 2. 문제점

-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재취업한 전직 금감원 출신 인사들은 주로 감독당국에 대한 '방패



막이' 역할을 하기 위해 영입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이들이 상주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하여 금융감독 당국의 엄정한 감독업무 수행이 가능할지 의문임

- 그러나 전직 금감원 인사들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 취업하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된 관행으로,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금감원 출신이 법인보험대리점(GA) 취업을 위해 사전에 취업심사를 받는 경우는 대리점 매출 100억원이 넘고 자본금 10억원이 넘는 GA에 한정되므로 이들의 재취업을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3. 개선방안

- 대리점 매출 100억과 자본금 10억이 넘는 GA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법상 사전 취업심사가 어렵다면, △ 재취업후 기존 감독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분야에 근무하도록 조건을 달거나 △ 매우 제한적인 기간만 근무하도록 조건을 달거나 △ 금감원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제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법인보험대리점은 영업현장에서 보험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이들이 감독당국 시절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부도덕한 영업현장을 잘 감시할 경우 오히려 법인보험대리점(GA)의 안정적인 정착을 뿌리내릴 수 있는 자양분 역할을 할 수도 있으나 현재까지 미지수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창호	02) 788-4582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손주형	02) 2100-2965

## 기업구조조정 현황과 과제

### 1. 현황

- 정부는 2015.10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산업·기업 구조조정 협의

체(이하 '협의체')」를 구성<sup>20)</sup>하여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취약업종에 대한 기업 구조조정 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채권은행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음

- 2016.4.26일 협의체에서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동 계획은 기업의 상황 및 해당 업종 특성, 관련 법규 등에 따라 3개 트랙으로 동시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2. 문제점

- 정부는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채권은행 중심으로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이러한 채권은행 중심 구조조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사항 중의 하나는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임
  - 향후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추가적인 부실채권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처리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자본금을 출자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음
  - 하지만, 한국은행의 국책은행 자본금 출자방안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통화정책의 원칙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고, 부실기업의 자구노력과 책임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직접 출자하는 방식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음
  - 이에 따라, 2016.6.8일 정부는 국책은행 자본금 확충 방안으로 2016년 중에 수출입은행에 1조원 수준으로 현물출자하고, 한국은행이 10조원을 한도로 대출하는 자금을 주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sup>21)</sup> 조성방안을 확정·발표하였음
- 한편, 국책은행 자본금 확충 방안뿐만 아니라 채권은행 중심의 현행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적들은 시장여건 및 기업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현행 채권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임
  - 실제로 채권은행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은 채권은행 간에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서로 갈등을 발생시키고,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이 더디게 진행될 우려가 있으며, 채권은행과 부실기업 간에 자율협약 등을 통해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소위 '관치금융'이 끊

20) 금융위원장(주재),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부기관장으로 구성됨

21)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는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고,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국책은행의 신종자본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임

임없이 지적되어 왔기 때문임

### 3. 개선방안

- 현재 기업구조조정은 국책은행의 자본금 확충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구조조정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국책은행자본확충 펀드 대출이나 정부의 출자금 모두 투명한 집행 및 관리가 필요함
    - 이번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에 출자되는 자금 등을 포함한 향후 구조조정 자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최소비용의 원칙,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을 준수하는 등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채권은행 주도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중심의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시장에서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업들의 회사채, 기업어음(CP) 발행 등이 증가하면서 채권은행의 역할이 축소되는 등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채권은행간 이해상충 발생으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이를 정부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관치금융'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셋째, 향후 정책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간의 중복적인 기능을 재점검하여 통합·연계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금융의 과도한 기능과 역할에 따른 문제도 매우 크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발전의 단계에 맞는 바람직한 정책금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 넷째, 기업구조조정은 민간에서 우선적으로 개별기업의 상황에 맞추어 재무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사업재편 등의 구조조정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 2016.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이밖에도 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지배주주의 부당한 이익추구 행위를 방지하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투명한 기업지배구조의 구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대형	02) 788-4585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실	기업구조개선과	-	02) 2100-2924

##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추진 현황 및 과제

### 1. 현황

- 정부와 한국은행 등은 2016.6.8일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여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함<sup>22)</sup>
  - 동 방안은 향후 구조조정 진행상황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응하여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직접출자와 함께 간접출자인 펀드 형태의 금융시장 안전판을 구축한다는 내용임
-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2016.7.1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여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방안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운용방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함<sup>23)</sup>
  - ① 대출금액 : 총 10조원 이내, ② 대출실행 시한 : 2017년말(다만, 매년말 국책은행자본확충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 ③ 대출기간 : 대출 건별로 1년 이내, ④ 대출금리, 대출담보, 이자수취 방법 등은 추후 대출실행 시 결정함

### 2. 문제점

- 금융통화위원회는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의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을 「한국은행법」 제64조제1항제2호<sup>24)</sup>에 따라 결정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위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음

22) 관계기관합동,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 보도자료, 2016.6.8.

23) 한국은행, 「한국은행,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관련 자금지원 방향 결정」, 보도자료, 2016.7.1.

24) 제64조(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이 받은 약속어음·환어음 또는 그 밖의 신용증권의 재할인·할인 및 매매, 다만,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부터

- 이는 「한국은행법」 제64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자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현재 동 규정 제2조<sup>25)</sup>에서 이러한 대출을 ① 자금조정대출, ② 금융중개지원대출, ③ 일중당좌대출로 구분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국책은행자본금확충펀드와 관련한 대출은 근본적으로 할 수 없다는 지적임<sup>26)</sup>
- 한편, 국책은행자본금확충펀드 대출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 약화 방지를 위해 5천억원을 출연한다는 방침임
  - 한국은행의 중소기업은행 경우 대출은 중소기업은행 BIS자기자본비율의 하락을 초래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은행의 국책은행자본금확충펀드 대출 원리금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 약화 방지를 위해 한국은행이 5,0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다는 방침인데, 한국은행의 신용보증기금 출연이 「한국은행법」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 등에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3. 개선방안

- 현행 「한국은행법」 관련 조문과 과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결정한 국책은행자본금확충펀드 관련 중소기업은행 대출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다만, 「한국은행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상적인 대출(금융중개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에서 대출대

1년 이내에 만기가 되는 증권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담보로 하는 1년 이내의 기한부(期限附) 대출
  - 가. 제1호의 신용증권
  - 나. 정부의 채무 또는 정부가 보증한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 다. 한국은행의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 라. 그 밖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증권
- 25) 제2조(대출구분)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용한다.
  1. 금융기관이 자금수급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하 “자금조정대출”이라 한다)
  2.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하 “금융중개지원대출”이라 한다)
  3. 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결제하는데 필요한 일종의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하 “일중당좌대출”이라 한다)
- 26)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한국은행법」 제64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일상적으로 대출하는 자금에 대하여 대출종류, 대출기간, 대출한도 등을 금융통화위원회가 사전에 정해 놓은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대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음

- 상기관, 차입금융기관의 의무, 대출형식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반면, 금번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대출과 같은 특별대출에 대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없다는 점에서 입법적 보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행법」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과 같이<sup>27)</sup>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한국은행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대출의 목적, 대출방법,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거나,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이와 함께, 현재 「한국은행법」에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등에 출자나 출연 등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별도로 없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한국은행법」 위반 사항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다소 모호하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한국은행은 2009년 신용보증기금 출연사례와 「한국은행법」 제1조제2항<sup>28)</sup>의 금융안정이라는 목적 규정을 감안할 때, 신용보증기금 출연에 대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한국은행법」 제1조제2항의 금융안정이라는 목적 조항을 확대하여 해석하면, 현재 한국은행에서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출연이외의 출자의 경우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음<sup>29)</sup>
    - 이러한 금융안정 목적 규정을 확대 해석하는 경우 소위 비전통적 통화정책인 양적완화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은행법」에 명확한 법적인 근거 없이도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안정이라는 목적을 위해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해보면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포함하여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의 범주를 어느 정도까지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입법적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

27) 「한국은행법」 제65조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금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긴급히 여신을 하는 경우 긴급여신의 목적과 이와 관련된 금융통화위원회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28)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29) 이러한 해석이 되면 한국은행이 「한국산업은행법」에 법적인 근거가 없어도 금융안정이라는 목적을 위해 산업은행에 출자를 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수출입은행과는 달리 산업은행의 경우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출자를 할 수 없다는 입장과 배치되는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대형	02) 788-4585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실	구조조정지원팀	-	02) 2100-2931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	-	02) 759-4491

## 국책은행의 독립성 강화

### 1. 현황

- 현재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지배구조 운영 형태가 다소 상이하지만, 최고경영자에서부터 사외이사, 감사 등 모든 임원의 임면과정에 정부가 관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 산업은행의 경우 회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전무이사, 상임이사 및 사외이사는 회장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하며,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하고 있음(「한국산업은행법」 제13조)
  - 수출입은행의 경우에는 은행장은 기획재정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전무이사, 상임이사 및 사외이사는 은행장 제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하며,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하고 있음(「한국수출입은행법」 제11조)

### 2. 문제점

- 2016.8.1일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시행되어, 향후 은행, 보험사,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는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 선임 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해야 함(「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17조)
  - 하지만, 수출입은행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적용대상 금융회사가 아니

며, 산업은행은 동 법률의 적용대상 금융회사이지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과 관련한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임원을 추천받아 선임할 필요가 없음

- 수출입은행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적용 대상 금융회사로 열거되어 있지 않음(「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조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 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에서 임원임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우선하여 적용됨(「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4조제1항)

### 3. 개선방안

- 국책은행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 해당 기관장에서부터 사외이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임원의 임면에 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현행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국책은행의 임원선임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임원을 선임하는 일반은행 등과 동일하게 임원선임 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국책은행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는 경우, ① 해당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는 방안과 ② 법률의 근거 없이 국책은행 기관장의 제청을 위해 임원후보를 추천받는 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아울러 국책은행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는 경우, 동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① 사외이사 등 해당 기관의 내부인사로 구성 하는 방안, ② 보다 독립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국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해 볼 수 있음
  - 국책은행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는 방안 외에도 단계적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대형	02) 788-4585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	02) 2100-2861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	044) 215-7613

## 선박금융 현황과 개선과제

### 1. 현황

- 2013.8월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선박금융공사 설립 대안으로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한 선박금융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함<sup>30)</sup>
  - 동 방안의 주요내용은 국제통상마찰 소지 등을 감안하여<sup>31)</sup> 민간재원(50% 이상)으로 상업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해운보증기금 설립방안을 검토하고,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의 선박금융 관련 조직·인력을 부산으로 이전하여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임
- 2014.2월 정부는 해운보증기금 설립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발표하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회사로 한국해양보증회사를 연내 설립하기로 하였음
  - 관계부처 논의결과, ① 타 산업과의 형평성, ② 정부의 손실보전규정에 따른 재정부담 가능성, ③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 ④ 장기 해운산업 불황에 따른 신속한 대책 마련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공공기금인 해운보증기금보다는 현행 법령(「보험업법」)에 따라 조속히 조치가 가능한 보증회사 설립을 결정함
- 이에 따라, 2014.9월 부산시 문현금융단지에 위치한 부산국제금융센터 내에 해양금융종합센터

30) 관계기관합동,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보도자료, 2013.8.27

31) WTO 보조금협정에서 보조금은 정책당국이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및 기업활동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의미하는데, 선박금융공사가 정부출자로 설립되고 선박이라는 특정산업을 지원하게 되므로 WTO 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

터가 설립되고, 한국해양보증보험은 2015.6.2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 허가를 받아 2015.8월부터 영업을 시작함

## 2. 문제점

- 해양금융종합센터 설립 이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는 2015년 28조원, 2016년 1~5월 5.2조원 규모의 선박금융을 지원함
  - 하지만, 이러한 선박금융 지원 규모는 해양금융종합센터 설립 이전인 2013년 30.8조원, 2014년 29.6조원 보다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상황임

표 3 | 기관별 선박금융 지원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공급 (승인금액 기준)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5
산업은행	14.10	10.60	10.59	6.33	8.60	0.49
수출입은행	14.49	6.25	11.74	15.78	15.83	3.68
(구)정책금융공사	2.85	5.58	4.48	2.56	-	-
무역보험공사	5.39	2.69	3.94	4.45	3.58	0.98
합계	36.83	25.12	30.75	29.62	28.01	5.15

자료: 수출입은행

- 한국해양보증보험은 선박구매에 필요한 해운사의 자기자금 부담금을 보완해주는 후순위대출, 지분투자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담당하지만, 현재 자본금은 1,338억원 수준으로 선박금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한국해양보증보험은 민간출자금을 포함하여 자본금 규모를 5,5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현재는 목표 자본금의 1/4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 특히, 당초 한국해양보증보험의 자본금의 50% 이상을 민간재원으로 마련한다는 원칙이지만, 민간 부분의 출자가 특히 부진한 상황임
    - 2015년 중에 민간에서 500억원을 출자하기로 계획했으나 실제 출자는 248억원에 그쳤고, 금년에도 현재까지 90억원을 출자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임

### 3. 개선방안

- 선박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선박금융 관련 상품을 연계한 맞춤형 선박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여 해양금융종합센터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함
  - 다만, 해양금융종합센터 설립 이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의 선박금융 지원 규모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은 현재 조선·해운산업의 어려운 시장상황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 향후 한국해양보증보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추가적인 자본금 확보 여부가 중요한 선결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적으로 향후 출자계획을 구체화하고 민간자본 출자 활성화 등을 통해 한국해양보증보험의 재무건전성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대형	02) 788-4585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	02) 2100-2861



## 예금보험제도 개선과제



### 1. 현황

- 우리나라는 1995.12월에 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제도가 1997.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지난 20년 동안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평가받고 있음
  - 또한, 금융안정위원회(FSB)<sup>32)</sup>가 예금보험, 금융회사 정리(resolution) 및 건전성 감독 등 가장 포괄적인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과 함께 한

국을 분류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은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신흥국가들에게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예금보험제도는 운영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들도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정무

## 2. 문제점

- 우선 국내 예금보험제도가 통합예금보험제도로 운영되어 오면서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업권별 특성을 고려한 예금보험제도로 발전해 오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현재 예금보험한도는 금융업종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금융회사별로 1인당 5천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예금자, 보험계약자 및 증권투자자의 경우 예금보호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규모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의 특성도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이를 감안하여 예금보험한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sup>33)</sup>
- 금융회사 부실의 조기 인식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단독조사,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 등이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실효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음
  - 예금보험공사의 단독조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면 금융회사의 부실이 객관적으로 이미 확인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되고 있어 조사실익이 크지 않고, 공동검사의 경우 금융감독원과의 실질적 협력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음
- 이밖에도 예금보험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예금보험위원회 구성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과반수 이상의 위원 위촉 등에 작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등 예금보험공사의 지배구조 관련 문제도 있음
  - 예금보험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1인, 기획재정부장관·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2인으로 구성됨(「예금자보호법」 제9조)

32) 금융안정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시스템 개선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이며, 각국의 예금보험제도를 기능에 따라 ① 보험금지급모델(paybox), ② 보험금지급추가모델(paybox plus) ③ 손실최소화모델(loss minimizer), ④ 위험최소화모델(risk minimizer)로 구분하고, 한국과 미국을 가장 포괄적인 예금보험제도인 위험최소화모델을 운영하는 국가로 분류하고 있음(FSB, 「Thematic Review on Deposit Insurance Systems」, 2012.2.).

33)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동일한 통합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사례를 보면 예금과 투자상품의 예금보호한도를 달리 적용하고 있음

### 3. 개선방안

- 현재 국내 예금보험제도에 노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개선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 통합예금보험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능별 예금보험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금융회사별 1인당 5천만원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보호한도를 금융업종 및 금융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둘째, 예금보험공사를 포함한 금융당국의 선제적 부실대응 기능 강화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금융시장 또는 금융회사 등의 부실을 적시에 인식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자체적인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셋째, 예금보호기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받지 않도록 이를 법에 규정하거나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예금보험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예금보험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의 자격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sup>34)</sup>, 금융위원회에 편중된 위촉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로보어드바이저( robo-advisor), 독립투자자문업자(IFA) 등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가진 금융회사의 출현과 금융서비스 제공에 따른 금융사고 및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보호 강화 논의가 필요함 시점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대형	02) 788-4585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실	구조개선정책과	-	02) 2100-2912

34) 예금보험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은 예금보험공사 임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금융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1조).

## 금융산업의 경제기여도 현황과 과제

### 1. 현황

- 최근 10년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금융산업의 산업연관분석을 한 결과, 국내 금융산업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산출비중 및 부가가치금액 비중이 낮아지면서 금융활동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남
  - 금융산업의 산출비중이 2007년 4.7%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산출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14년에는 4.0%까지 감소하였음
  - 국내 금융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금액의 비중도 2007년 6.8%에서 2014년 5.6%까지 감소하였음
    - 모든 산업의 부가가치를 합하면 국내총생산(GDP)이 되므로 금융산업의 부가가치금액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국내총생산에 기여하는 부분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부가가치 구성 항목 중에서 영업잉여 부분의 정체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실물경제 악화 및 저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금융산업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었기 때문임

그림 1 | 금융산업의 산출액 및 산출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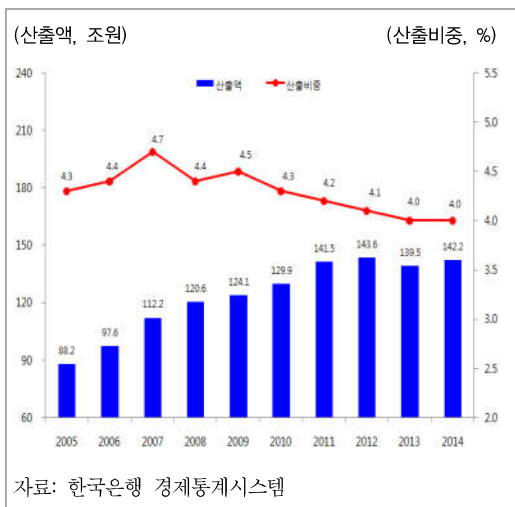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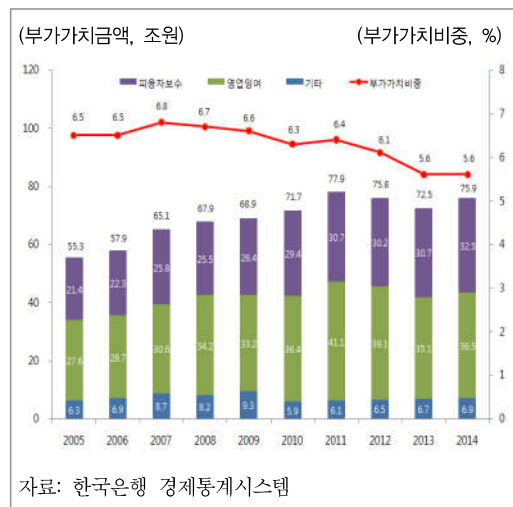


그림 2 | 금융산업의 부가가치금액 추이



## 2. 문제점

-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형적인 규모면에서 크게 성장했는데,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GDP 대비 금융자산비율을 보면 1997년 5.1배에서 2014년 9.1배로 2배 가까이 상승함
  - 하지만,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양적확대와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하고 글로벌 금융경쟁력도 높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대내외적인 평가임
- 최근 세계경제포럼(WEF)과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결과를 보면, 평가 방법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주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경쟁 상대국보다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 2016.5월 IMD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금융부분 평가결과에서 전체 61개국 중 37위를 기록하면서 지난해에 비해 6단계가 하락함
  - 2015.9월 WEF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금융부분 평가결과에서 전체 144개국 중 87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으로 평가됨

## 3. 개선방안

- 금융산업이 다른 산업에 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연계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기여도를 살펴보면,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고용창출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금융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2014년 기준으로 0.847이며, 전체산업 평균(0.697) 보다 높은 수치로 금융산업이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큼
  - 금융산업의 고용유발계수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10.2이며, 전체산업 평균(8.8) 보다 높은 수치로 금융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다른 산업보다 높음
- 이러한 금융산업의 경제기여도를 감안하면 국내경제 전반의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 증대 가능성 제고를 위해 금융산업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한 시기임
  - 이를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혁신과 규제완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와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임

- 특히, 현재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점차 저하되고 노령화도 급속히 진전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융발전을 통해 경제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통로(Channel)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대형	02) 788-4585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02) 2100-2831

## **신용평가제도 개선 논의과제**

### 1. 현황

- 국내 신용평가시장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3개 회사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신용평가 품질이 저하되고 신용등급 담합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국내 3대 신용평가사들이 신용평가를 부실하게 해 온 것으로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중징계를 통보받으며 이른바 ‘등급장사’를 해온 사실이 적발됨<sup>35)</sup>
-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2015.4.14일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3사에 기관경고 및 대표들에 대해 문책경고를 결정함
  - 금융감독원은 2015.1.2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실 신용평가를 한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3사에 대해 기관에는 기관경고를, 임직원에게는 경중에 따라 중징계와 경징계를 내린 바 있음

35) 국내 신용평가사가 매긴 신용등급 중 A등급 이상의 비중은 77.4%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22.9%)보다 3.37배나 높으며, 법에 의해 부여되는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은 시장에서 단순 참고용으로 전락함(한국경제, 2014.6.22일)



## 2. 문제점

- 국내 신용평가시장이 회사채 시장의 발전으로 크게 확대되고 신용등급의 적정성, 적시성 등의 문제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실제 제도개선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2012.3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은 현재까지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와 함께, 2013년 동양그룹 사태 이후 신용평가회사의 독립성, 투명성 및 책임확보 장치 마련을 위한 신용평가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함
    - 그 동안 논의된 국내 신용평가시장의 제도개선 사항은 ① 수수료 체계 개선, ② 신용평가 순환평가제 도입, ③ 외부기관 신용평가사 평가제도 도입, ④ 신용평가 결과 비교 공시 강화, ⑤ 등급감시 시스템 도입, ⑥ 독자신용등급 제도 도입, ⑦ 제재 강화방안 등이 있음
  - 특히, 금융위원회는 2015년 상반기에 계열그룹 지원 없는 기업의 자체적인 신용도를 최종 등급과 병기하는 독자신용등급제도 도입을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 동 제도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sup>36)</sup>

## 3. 개선방안

- 금융위원회는 국내 신용평가시스템 개선을 위해 2016.3월 「신용평가 선진화 TF」를 구성하여 과거 도입을 추진하다가 무산되었던 독자신용등급제도, 복수평가제도, 제4의 신용평가회사 설립 등 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재검토해오고 있음
  - 독자신용등급제도는 투자자 보호 및 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기업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제도의 도입효과와 시장영향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도입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복수평가제도는 국내 신용평가회사 간의 평가수수료 담합을 초래하고 오히려 신용평가회사를 보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복수평가제 폐지의 대안으로는

36) 금융위원회는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 독자신용등급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2015년 상반기에 도입하겠다는 「201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2015.2.)」를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음

- 일정 기간마다 신용평가사를 교체하는 신용평가 순환평가제 도입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현재 독과점화된 국내 신용평가시장의 경쟁을 유도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한 신용평가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는 제4의 신용평가회사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다만, 신용평가제도의 근본적인 제도개선 없이 새로운 신용평가회사의 설립만으로는 신용평가시스템의 선진화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신용평가회사들 간에 과당경쟁이 발생하여 신용평가 품질이 저하되는 등 기존 문제들의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대형	02) 788-4585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	02) 2100-2682

##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의 내용 및 과제

### 1. 현황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전통적인 규제 체계 및 금융감독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키코(KIKO) 및 저축은행 후순위채 등의 불완전 판매로 대규모 금융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고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추진되어 옴
- 그동안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제도가 금융소비자보호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금융업권별 규율체계 하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보호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

안 제정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sup>37)</sup>

- 하지만,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총망라하여 규정하면서 현재 규제가 없거나 미흡한 영역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19대 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함

## 2.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는 최초 정부안 제출 이후의 입법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제20대 국회에서 「금융 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을 재추진하여 입법예고(2016.6.28~8.8일) 등을 거쳐 2016.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은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제출한 정부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간의 국회 논의사항, 정책변화 사항 등이 추가 반영됨
  - 기존 정부안에서 국회에서 논의된 사전정보제공(비교공시 등), 판매원칙 위반시 과징금 등 부과, 업무를 위탁한 대리·중개업자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용자 책임 등을 반영함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을 대출계약 성립 이후 3년 이내로 제한(기존안 : 5년 이내), 2천만원 이하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소제기 금지(기존안 : 5백만원 이하) 등 제19대 국회 법률 심사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포함함
  - 아울러 그간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2015.9월)’, ‘금융 소비자보호규제 강화 방안(2015.12월)’, ‘자문업 활성화 방안(2016.3월)’ 등을 「금융 소비자보호 기본법」 체계에 맞춰 반영함
  -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원(장) 관련 업무(분쟁조정, 금융교육·비교공시 위탁업무 등)는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으로 향후 국회에서 논의하여 확정하기로 함

37) 이와 관련된 법안은 정부가 국회에 2012.7.6일 제출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민병두의원이 2013.6.12일 대표발의한 「금융상품 판매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강석훈의원이 2013.10.28일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 이종걸의원이 2013.11.28일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있었음

### 3. 개선방안

-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쟁점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는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 형태가 핵심 현안과제 중의 하나로 논의될 것으로 보임<sup>38)</sup>
    -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치 형태에 대한 논의가 오래 지속되면서 다른 주요 이슈들에 대한 조정도 함께 늦어졌다는 점에서 볼 때,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형태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해당 법률안 논의시에는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문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금융소비자의 손해발생시 고의과실 입증 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지도록 하는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에 있어 위법여부 전부에 대한 책임 전환이 가능한지, 아니면 일부의 행위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이 있음
    -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금융상품의 종류와 유형이 다양하고 적용대상이 광범위하여 동 제도 도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이 있음
    - 금융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소송이 남발되는 경우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금융상품의 판매로 발생하는 가해행위의 유형이 사안별로 다양하여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대형	02) 788-4585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실	금융소비자과	-	02) 2100-2631

38) 이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①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의 이해상충, ② 현행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의 실효성 부족, ③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 중인 해외사례 등을 주요 논거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① 감독기구의 이원화로 인한 규제의 중복, ② 감독기관간 혼선과 책임소재 불분명 등을 주장하고 있음



## 분식회계 제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현황

- 분식회계를 규제하는 법률로는 「상법」,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등이 있음
  - 「상법」에서는 제399조와 제414조 규정에 의해 분식회계 시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외감법」에서는 분식회계를 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회사 및 임직원 등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의 근거를 두고 있음
  -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 회계처리준칙’ 및 「외감법」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2. 문제점

- 그동안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이루어져도 해당 회사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되었음
  - 최근에도 수차례 분식회계 사건이 발생했지만, 그로 인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가벌성을 고려했을 때 그 처벌 수위가 경미했다는 지적이 많음
  - 실제 분식회계로 인한 제재를 가함에 있어 정상참작의 여지를 두어 감경을 받는 사례가 많았음

### 3. 개선방안

- 벌금 및 과징금 부과 규정을 강화하고 실제 적용 시 감경 여부를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상 7천만원 이하 벌금(「외감법」 제20조), 혹은 2억원 이하 벌금(「자본시장법」 제444조)을 부과할 수 있으나, 이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 현재 「외감법」 상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없으며, 「자본시

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만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과징금 부과근거를 신설하는 「외감법」 개정이 논의 중에 있음

- 분식회계가 명백한 형사범죄임을 자각하고 이에 대한 윤리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분식회계(粉飾會計)는 본래 여성들이 화운데이션(분)을 얼굴에 발라 화장을 함으로써 얼굴의 원형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려고 한다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회계장부나 회계보고서를 조작하여 이익을 부풀리는 의미라 할 수 있음
    - 미국에서는 이를 재무사기(financial fraud) 또는 회계사기(accounting fraud) 등의 용어를 주로 사용함으로써 회계장부나 회계보고서를 조작하는 것이 결국 재무사기나 회계사기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셈임
  - 분식회계는 기업이 손실을 일시에 떨어내는 Big bath와의 구분이 어렵지만,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분식회계로 인해 이해관계자가 입게 되는 직·간접적인 막대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명백한 형사범죄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음
    - 회사 경영진이 분식회계의 의도를 가지면 감사인이 이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아 분식회계 등 회계비리는 일차적으로 회사의 책임이므로, 회사 내부적으로 윤리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최지현	02) 788-4584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	02) 2100-2680

## 부실감사 제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현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서는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해

형사처벌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제20조)

- 감사조서를 위조·변조·과기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허위사항 기재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등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외감법」 이하 관련 규정 및 「공인회계사법」 이하 관련 규정에서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외감법」 제17조에서는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2. 문제점

- 외부감사인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감사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부실감사는 최근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등의 분식회계사건에서도 부각된 바 있음
- 부실감사는 분식회계와 마찬가지로 그 고의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처벌단계까지 진입하기가 어려워 사전적 대책 마련이 중요함
- 또한 부실감사가 발생한 경우 지금까지 그에 대한 제재가 경미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3. 개선방안

-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회에서도 「외감법」 개정을 통해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음<sup>39)</sup>
  - 금융당국은 부실감사가 발생한 경우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게도 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하고, 중간감독자에게도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 제재규정 강화와 더불어 부실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적 방안으로 외부감사인이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39) (제19대 국회) 정호준의원 대표발의안(2013.1.10., 의안번호 1903287), 김종훈의원 대표발의안(2013.3.14., 의안번호 1904069) - 대안반영 폐기/ (제20대 국회) 박용진의원 대표발의안(2016.7.1., 의안번호 2000628), 김해영의원 대표발의안(2016.7.11., 의안번호 2000792)

- 외부감사인이 독립성을 확보하고 제대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외부감사인 유지제도, 강제교체제도, 자유수입제, 비감사업무 겸직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금융당국의 회계감리를 강화하고, 미국의 회계감독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PCAOB)와 같은 독자적인 기구를 구성하여 회계감리에 대한 권한을 부여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최지현	02) 788-4584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	02) 2100-2680

##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공유의 문제점 및 과제**

### 1. 현황

- 수년간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개선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어 왔고, 특히 2014년 초 발생한 신용카드사 대규모 정보유출사고를 계기로 대대적인 법제도 개편이 이루어졌음
- 특히, 신용정보를 집적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건과 역할 및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그 결과 지난 2016.1.1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한국 신용정보원’(이하 ‘신용정보원’)이 설립되었음
- 신용정보원은 기존 업권별로 있던 5개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여신금융 협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개발원에서 관리하던 일반신용정보, 기술신용정보 및 보험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함



## 2. 문제점

- 개인신용정보를 하나의 기관이 집중 관리하도록 함에 있어서 신용정보를 빅데이터 업무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문제와 정보보호의 문제가 있음
  - 이미 신용정보원은 집중된 정보를 통계화 해 빅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7월부터 통계정보를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sup>40)</sup><sup>41)</sup>
  - 보유한 정보를 체계화하여 이를 활용한 통계를 발표하고, 근거법령이 마련된 이후에는 금융회사 간의 자료 또는 금융회사와 신용정보원의 자료를 결합한 통계 제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함
  - 하나의 기관에 모든 금융업권의 개인신용정보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원에서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지금까지의 정보유출사고보다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3. 개선방안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은 정보유출사고를 계기로 하여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집중하고 정보 이용·제공자들의 책임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빅데이터 산업의 발달을 위해 정보 공유를 용이하게 해야 하는 과제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철저히 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정보주체의 권익에 해를 입히지 않고 정보를 활용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적정한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핀테크를 활성화 하는 등 금융소비자에게 더 발전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향후의 과제가 될 것임
  - 또한, 신용정보원은 원래의 설립취지인 신용정보의 집중관리와 보호에 치중하되 빅브라더(Big Brother)로 기능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 집중된 정보의 가치는 개별 기관에 산재해 있을 때보다 크고 활용 가능성도 많아, 유출사고 발생 시 그 피해의 범위와 규모가 상당할 것이므로 정밀한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해야 할 것임
  - 또한, 정보를 여러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정보들이 다시 집적되어 악용될 여지도

40) 한국신용정보원, 「빅데이터 활성화 추진 현장 간담회 개최」, 2016.2.22.

41) 파이낸셜뉴스,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정보 빅데이터로 활용」, 2016.2.22일자 기사

있으므로, 제공받는 목적을 분명히 하도록 하고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엄격하게 제재를 해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최지현	02) 788-4584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실	신용정보팀	-	02) 2100-2620

정무

## 창업자 연대보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현황

- 금융당국은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자금 대출과정에서의 연대보증 부담을 감소시켜주기 위해 연대보증 면제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음
  - (2014.1.8.)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2014.2월 시행일 이후 신규창업 기업을 상대로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을 면제하고 창업자의 기술력 수준에 따라 투트랙으로 접근하여 일정 수준 이상 우수한 기술력과 신용도를 가진 창업자에 대해 보증기관의 연대보증 부담을 5년간 면제함
  - (2015.1.5.) 금융당국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 업무보고에서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하고 실패기업의 재도전 환경 조성계획을 밝혔음
  - (2015.11.4.)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新 보증체계’를 발표하여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 2. 문제점

-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것은 창업자의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겠으나, 도덕적 해이나 무분별한 창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 연대보증 면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찬반의견이 있음

표 4 |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찬반논거

	주요 논거
찬 성	① 창업자 연대보증이 우수인력의 창업의지 저해 ○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될 경우 청년들의 창업의지가 6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 ② 높은 퇴출장벽으로 인해 한계기업 양산 ○ 사업실패 시 연대보증 부담이 발생하여 경영위기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 ③ 공적 보증기관이 또 다른 보증요구를 하는 것은 부당 ○ 공적보증기관이 연대보증을 요구하기 보다는 보증기관의 심사능력 제고를 통해 우수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필요
반 대	① 연대보증 폐지 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 진입·퇴출장벽이 전면 낮아지면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책임경영을 확보하기 곤란 ② 무분별한 창업과 실패는 사회적 손실로 귀결 ○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 70% 이상은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고 있어 무분별한 창업지원이 사회적 편익 증진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님 ③ 현재 수준의 보편적 보증제공은 불가능할 가능성 ○ 현행 공적보증 제도는 보편적 편익 제공을 목표로 하므로 연대보증 전면폐지 시 현재 수준의 보편적 보증 제공은 어려울 수 있음 ④ 개인이 주채무책임을 갖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역차별 발생 ○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달리 개인이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갖게 되므로 연대보증 폐지 시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불리

자료: 금융위원회,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 보도자료, 2014.1.8.

### 3. 개선방안

- 연대보증의 완전 폐지보다는, 원칙적으로 폐지를 추진하되 물적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채무자로 하여금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방안이 필요할 것임
  - 다만, 이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연대보증의 의미 및 효과를 사전에 고지하고 보증의사를 명확히 확인해야 할 것임
- 연대보증을 대체하여 채무자의 신용도와 상환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증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며, 특히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의 정비를 통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최지현	02) 788-4584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	02) 2100-2860

## 상호금융업권 연대보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현황

- 2013.7월부터 제2금융권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여 상호금융업권의 연대보증은 신규취급이 금지되었으며, 기존 연대보증 대출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8.6.30일까지 해소하도록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 2016.2월말 현재 잔액을 보유중인 전체 대출계좌를 대상으로 불건전영업행위 ‘의심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2016.3.28.~4.15.)한 결과, 불건전영업행위로 ‘의심’되는 거래가 총 45,971건으로 전체의 0.8%를 차지했으며, 그 중 연대보증<sup>42)</sup>이 19,661건으로 의심거래의 42.8%를 차지하였음

### 2. 문제점

- 연대보증 종료 유예기간을 두었으므로, 그 기간 동안 기존 연대보증부대출기한이 종료되어 재약정하거나 기한연장을 하게 되는 경우 즉시 연대보증을 종료해야 하나,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상당수 기관에서 유예기간까지는 연대보증을 유지해도 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했다고 함

42) 2013.7월 연대보증 폐지 이후 신규대출, 재약정 및 기한연장 시 각 중앙회 통합업무시스템의 담보권 설정 및 연대보증 등록화면에서 연대보증으로 전산 등록한 거래

### 3. 개선방안

- 향후 유예기간 종료시까지 금융감독원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미 해소되었어야 할 연대보증이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으므로, 해당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임
-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규모가 큰 은행기관과 달리 신용평가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있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신용대출 시 신용도 담보를 위해 연대보증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므로, 상호금융업권 자체적인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원이 필요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최지현	02) 788-4584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 정책관실	중소금융과	-	02) 2100-2990

## 카드 가맹점수수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현황

-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합리화,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인의 가맹점수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2007년 이후 6차례에 걸쳐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였음
- 2012.3.21일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어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개편의 기본 방향성이 제시되었음
  - 2012.7월 금융당국은 ‘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 방안을 발표하여 가맹점 수수료 산정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카드사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음
- 2015.11.2일 금융당국은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기존 1.5%에서 0.8%로, 중소기업은 기존 2.0%에서 1.3%로 각각 0.7%p씩 인하하도록 하였음

## 2. 문제점

- 가맹점수수료 산정 기준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권별, 금액별, 가맹점 매출규모별 등을 기준으로 가맹점수수료 우대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 지금까지 의원 개정안으로 발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영세가맹점 기준을 세분화하여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 소액에 대해서는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기타 택시나 등록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 등이 있음<sup>43)</sup>
- 카드업계는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가맹점수수료가 전반적으로 인하되면서 가맹점수수료 수익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며, 다른 수수료와 달리 가맹점수수료에 대해서만 정책적으로 인하시키는 데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 3. 개선방안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신용카드 결제 거부나 현금결제와의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 처벌사례가 없어 해당 조문의 실익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 일정금액 이하의 거래에서 가맹점이 신용카드 대신 직불형 카드 또는 현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가맹점수수료가 수익자 부담 원칙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혜택을 주로 받고 있었던 회원들도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등 카드 결제비용의 공평한 분담이 필요함
- 카드 가맹점수수료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수수료 산정기준을 원칙으로 하면서 구체적 타당성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3) 2012.11.15일 심재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안번호 1902586), 2013.12.16일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안번호 1908577), 2015.6.24일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의안번호 1915751), 2016.7.26일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안번호 2001190) 등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최지현	02) 788-4584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 정책관실	중소금융과	-	02) 2100-2990

**청년층 금융채무불이행자 발생원인 및 과제**

1. 현황

- 2005.4.28일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면서 기존의 ‘신용불량자’라는 명칭 대신 ‘금융채무불이행자’라는 명칭이 사용됨
  -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sup>44)</sup>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기존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됨

표 5 최근 5년간 연령별 금융채무불이행자<sup>45)</sup> 등록 현황(연말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2011년	인원	676	136,015	270,212	407,148	307,492	140,107	1,261,650
	금액	154,182	1,154,181	9,357,092	37,121,244	55,861,422	28,486,036	132,134,157
2012년	인원	565	144,104	270,689	382,420	304,357	140,809	1,242,944
	금액	147,816	1,365,108	10,789,672	38,360,655	60,510,917	37,431,086	148,605,253
2013년	인원	440	133,782	239,364	320,645	262,769	124,063	1,081,063
	금액	164,698	1,260,648	10,090,402	34,298,938	57,514,515	38,397,026	141,726,228
2014년	인원	533	125,605	242,530	316,416	265,654	129,977	1,080,715
	금액	1,371	1,207,866	8,181,883	31,004,926	54,541,053	41,328,644	136,265,744
2015년	인원	429	116,873	228,989	294,230	257,002	134,439	1,031,962
	금액	1,633	1,086,376	7,485,088	28,062,440	52,002,233	45,902,725	134,540,495

자료: 한국신용정보원

4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별표 2] 신용도 판단정보 중 ‘대출금 등의 연체 내용’  
 45)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이하 ‘연체등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에 등록된 자

## 2. 문제점

- 전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람 중에 청년층(10~30대)의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는 10% 미만으로 그리 크지 않으나, 인원 기준으로는 30%를 상회하고 있음
  - (금액 기준) (2011년) 8.07% → (2012년) 8.28% → (2013년) 8.13%  
→ (2014년) 6.89% → (2015년) 6.37%
  - (인원 기준) (2011년) 32.3% → (2012년) 33.4% → (2013년) 34.6%  
→ (2014년) 34.1% → (2015년) 33.6%
- 청년층의 경우 아직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10대), 경제활동을 막 시작해서 소득이 많지 않음에 따라(20대, 30대<sup>46)</sup>) 부모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채무불이행 상태가 발생한다는 것은 취업시장 악화, 비싼 등록금 등의 사회적 문제가 큰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므로, 이를 짚어볼 필요가 있음
  - 특히 최근 ‘청년실신(청년 실업자·신용불량자)’ 문제를 얘기할 때 학자금대출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밖에 통신비도 언급되고 있음

## 3. 개선방안

- 현재 연 2% 정도로 적용되고 있는 학자금 이자율을 인하하여 이자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그만큼 학자금 대출의 상환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학자금 분할납부제를 활성화하고, 적정 산정을 통한 학자금 인하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학자금 자체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을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최지현	02) 788-4584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실	신용정보팀	-	02) 2100-2620

46) 최근 취업연령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인해 30대의 경제력도 높지 않다고 가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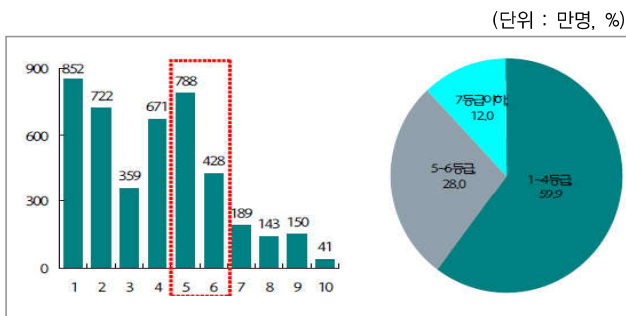


**비은행권 중금리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현황**

- 중간 수준의 신용도와 리스크를 가진 금융수요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금리대 신용공급이 미흡한 상황임<sup>47)</sup>
  - 고신용자는 은행에서 5% 미만의 저금리를 적용받고, 중·저신용자는 20% 초과 금리를 적용받는 등, 금리구조가 단절화된 금리단층 현상이 나타남
    - 은행에는 1~3등급의 고객이, 저축은행에는 7~10등급의 고객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중간층인 5~6등급을 위한 대출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임<sup>48)</sup>

【그림 3】 개인 신용등급별 인원분포(2014년말 기준)



【그림 4】 업권별 신용대출 평균금리



자료: 백중호, 「국내 중금리 대출시장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 『이슈분석』 제5권 26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5.7.6.

**2. 문제점**

- 저축은행 등의 경우 높은 원가구조, 구조조정 이후의 보수적 운영 등으로 고객 선별 수단 없는 금리 인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신용평가 정보 부족, 평가 시스템 미흡 등을 이유로 금융회사가 중신용자의 신용도를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임

47) 금융위원회,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 2016.1.28.  
 '중금리 신용대출'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으나,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10% 전후 금리대의 개인신용대출을 지칭하는 것으로 봄(일반적으로 4~7등급, 7~15% 금리 개인신용대출로 이해)  
 48) 백중호, 「국내 중금리 대출시장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 『이슈분석』 제5권 26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5.7.6.

- 상호금융기관 역시 담보대출 중심의 안정적 영업방식을 지향함에 따라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취급에 소극적임

### 3. 개선방안

- 상호금융기관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취급할 필요가 있음
- 상호금융기관은 지역밀착형 금융을 통해 정성적 정보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중신용자들에 대한 정교한 신용평가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담보대출에 비해 리스크 부담이 있으므로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며, 조기경보시스템 등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최지현	02) 788-4584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 정책관실	중소금융과	-	02) 2100-2990

## 대부업 광고 규제

### 1. 현황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은 2002년 제정되었으나 제정 당시 광고규제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고, 2005년 5월 「대부업법」 개정 시 대부업 광고 주체 제한과 규정, 벌칙과 과태료 조항이 처음으로 명시되었으며 이후 6차례 개정이 있었음
- 2015년 7월 「대부업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대한 예시 규정과 대부업자

의 방송광고를 특정시간에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최근에는 대부업과 더불어 저축은행·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상품 TV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대부업법」<sup>49)</sup>, 「여성전문금융업법」<sup>50)</sup>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 2. 문제점

- 대부업 광고 제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찬·반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 광고 제한에 대한 찬성 측 입장에서는 국민 정서상의 이유, 허위 및 과장, 미화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지나친 광고비 지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 미성년자·청년들의 인식 왜곡 등을 논거로 들고 있음
  - 반면, 광고 제한에 대한 반대 측 입장에서는 경제적 효율, 형평성의 문제, PP업계의 광고매출 급감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대부중개업자의 증가로 인한 풍선효과, 법적 타당성의 부재 등을 논거로 들고 있음

## 3. 개선방안

- 「대부업법」 위반 광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및 시·도 지사가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나 제보·민원을 통해 적발하여 조치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애진	02) 788-4586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 정책관실	서민금융과	-	02) 2156-9475

49) 의안번호 2001141, 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50) 의안번호 2001130, 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 P2P 대출 규제



### 1. 현황

- P2P(peer-to-peer 혹은 person-to-person) 대출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금융기관의 중개행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차거래를 수행하는 금융행태를 지칭함
- 2016년 3월 기준, 20개 업체(대부업 등록 19개, 저축은행 제휴 1개)가 영업 중으로, 2015년 말(17개사) 대비 3개사가 증가하였으며, 대출규모는 2016년 3월 기준 723.7억원으로 2015년 말 대비 약 2배 증가하였음

### 2. 문제점

- 최근 P2P 대출을 사칭하며 투자원금뿐 아니라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준다면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업체에 대한 신고가 금융당국에 접수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P2P 대출의 불법·부실 대출과 관련된 법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금융사고 발생우려가 상당히 높음

### 3. 개선방안

- 미국·영국·중국 등은 최고 금리 규제, 투자자 보호 규제, 허가제와 보고의무 등의 규제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P2P 대출만을 위한 규율체계가 없는 상황이므로, 미국·중국 등 해외사례와 같이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발달에 따라 P2P 대출시장이 보다 건전하고 내실 있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T/F를 구성하였으나 업체의 자정적인 노력도 함께 요구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애진	02) 788-4586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 정책관실	서민금융과	-	02) 2100-2614

## 금융사고 백서

### 1. 현황

-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금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총 24건의 대형 금융사고가 일어나 약 1조5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함
  - 유형별 건수는 횡령 4건, 배임 8건, 사기 12건이고, 금액 면에서는 배임이 약 9천9백 억원으로 그 규모가 가장 큼

【표 6】 최근 5년간 금융사고 현황

(단위 : 건, 억원)

금융사고유형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6월말	총계
횡령/유용	2 (611)	- (-)	- (-)	1 (112)	- (-)	1 (105)	- (-)	4 (828)
배임	4 (5,473)	1 (179)	- (-)	2 (4,072)	- (-)	- (-)	1 (234)	8 (9,958)
사기	1 (110)	1 (236)	- (-)	1 (100)	8 (3,103)	1 (1,151)	- (-)	12 (4,700)
도난/피탈	- (-)	- (-)	- (-)	- (-)	- (-)	- (-)	- (-)	- (-)
계	7 (6,195)	2 (415)	- (-)	4 (4,284)	8 (3,103)	2 (1,256)	1 (234)	24 (15,486)

주: ( )은 금융사고 금액

## 2. 문제점

- 금융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재발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백서 발간’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나, 최근 5년간 단 두 차례의 백서만이 발간됨
  - 즉,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발생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음
  - 두 차례 발간된 백서는 ‘상호저축은행 백서’와 ‘동양그룹 사태 피해구제 백서’임
    - ‘상호저축은행 백서’는 2012년 5월에 발간된 백서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의 의뢰에 따라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작성함
    - ‘동양그룹 사태 피해구제 백서’는 2016년 1월 발간된 백서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실에서 작성함
- 반면, 영국의 경우 최근 5년간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장기간에 걸친 조사 후 舊 FSA(現 FCA)에서뱅크런, 파산, 금리조작 등 금융사고에 관한 백서를 4차례 발간함
  - 주로 FSA 청장의 지시로 내부감사팀, 금융범죄조사과에서 작성함

## 3. 개선방안

- 금융당국은 대형 금융사고 발생 시 마다, 사고 분석에 대한 면밀한 조사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사고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제19대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대형 금융사고에서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하여금 금융사고 백서를 발간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sup>51)</sup> 임기만료로 폐기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애진	02) 788-4586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실	서민금융과	-	02) 2100-2614

51)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62)